서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(재계약) 동의안 시 사 보 고 서

1. 심사과정

O 제출일자 : 2021. 8. 26.

O 제 출 자 : 서구청장

○ 회부일자 : 2021. 8. 27.

○ 상정 및 의결 : 제22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(2021.9.6.)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: 박원숙 복지정책과장)

가. 근거법령

- O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2조, 제34조
- O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제21조, 제21조의2
- O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」제6조
- O「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」제12조의2
- ○「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, 제4조의 3

나. 제안이유

○ 「서구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, 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의 민간위탁(재계약)에 대한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O 소 재 지 : 서대구로 330(비산동)

O 규 모: 802.61㎡(5, 6층)

○ 종 사 자 : 24명

- O 재위탁기관 :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(대표이사 변상길)
- O 위탁기간 : 5년(2022. 1. 1. ~ 2026. 12. 31.)
 - ※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'21년 여성가족부 지침
- O 위탁내용 : 시설 및 통합서비스사업 운영 전반
- O 선정방법: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한 적격자 최종 의결
 - ※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채은실)

- 본 동의안은 서구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운영기간(2019.1.1.~ 2021.12.31.) 만료에 따라 「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3에 의거 민간위탁(재계약)에 대한 구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.
- 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는 전국 최초 결혼이주여성 취업교육센터를 설치하는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수행해 왔고, 2021년 7월 실시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평점94.6점 으로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며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에서도 적정 하다는 결과가 나왔음.
-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에 재위탁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• 답변요지 : 생 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